

# 늘봄 · 창의 · 가족센터 운영지침

■ 제 정: 2024년 3월 25일

■ 관리부서: 아시아여성연구원 늘봄 · 창의 · 가족센터

## 제1장 총칙

**제1조(명칭 및 위치)** 이 센터는 숙명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연구원 산하 늘봄 · 창의 · 가족센터라 하며, 숙명여자대학교 (이하 “본교” 라 한다.) 내에 둔다. 영문으로는 Center of Nulbum · Creativity · Family (약칭 CNCF)라 한다.

**제2조(목적)** 이 지침은 늘봄 · 창의 · 가족센터(이하 “센터” 이라 한다.)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지침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3조(설립목적)** 센터는 여성의 일 · 가정양립, 초저출생,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가족 및 자녀 지원 관련 이론 및 정책 등을 개발하여 연구와 교육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고 연구 성과의 사회적 환원 및 통합에 기여한다.

**제4조(사업)** 센터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.

- 여성의 일 · 가정양립 지원을 위한 정책 및 서비스 연구
- 여성의 경력 및 전문성 개발을 위한 학제 간 융합연구
-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
- 국내 · 외 여성 및 가족 관련 기관과의 교류 및 협력 사업
- 연구발표회, 강연회 및 강습회 개최
- 저명한 외국학자의 초빙과 연구원 해외파견
- 기타 센터 설립목적에 부합되는 사업

**제5조(센터)** ① 늘봄 · 창의 · 가족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연구원과 별도로 정한다. (신설 2024.03.25)

## 제2장 조직

**제6조(센터장)** ① 센터에는 센터장을 두며, 센터장은 센터 운영에 관한 제반 업무를 통할한다.

② 센터장은 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하며,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③ 센터장은 연구과제와 사업 총괄책임자가 되며, 해당 연구과제와 사업이 종료할 때까지 업무를 수행한다.

**제7조(늘봄사업단)** ① 센터 내에는 늘봄사업단을 설치할 수 있으며, 센터장은 늘봄사업단에 관한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.

② 늘봄사업단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경영기획팀, 운영관리(예술강사)팀, 연구개발팀을 둘 수 있다.

**제8조(늘봄사업단 전문위원회)** ① 전문위원회는 본교 교원 5인 이내로 구성하고, 위원은 센터장이 임명한다.

② 위원은 늘봄 관련 학술 활동 및 사업실적이 우수한 사람으로 한다.

③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 단, 해당 과제 및 사업 종료 시 위원의 임기는 종료된

---

다.

**제9조 (팀장)** ① 센터에 팀장을 둘 수 있으며, 팀장은 본 센터의 사업에 관한 제반 업무를 수행한다.

② 팀장은 센터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내규에 따라 1년 단위로 재임용할 수 있다.

**제10조(연구원 및 연구보조원)** ① 센터는 연구원과 연구보조원을 둘 수 있다.

② 연구원은 연구 수행에 적합한 본 대학교 석사학위 이상의 소지자로 하며 센터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한다.

③ 연구보조원은 연구 수행을 보조하는 본 대학교 학사학위 이상의 소지자로 하며 센터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한다.

### 제3장 재정

**제11조(재정)** 센터의 재정은 다음으로 충당한다.

1. 연구과제 및 사업비
2. 기업 및 개인의 찬조금
3. 기타

**제12조(회계연도)** 센터의 회계연도는 본교의 회계연도와 같다.

**제13조(장부 및 물품관리)** ① 센터장은 센터의 재정에 관한 회계장부를 기록, 유지하여야 한다.

② 센터장은 센터 내의 제반 시설과 물품을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.

### 제4장 보칙

**제14조(재산의 귀속)** 센터가 해산될 경우 그 재산은 본교에 귀속된다.

**부 칙<2024.03.25>**

**제1조(시행일)** 이 지침은 2024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.